[법제처-13-0076]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

#질의회신

'기능이나 종류의 동일함으로 제한하지 않기에 하수도시설을 도로로 대체 가능'

[질의요지]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,지자체,공기업 등인 사업시행자가 산업 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 치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,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 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는바,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 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'기존의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'에 해당하는지?

[회신내용]

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(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24조의4제9호)에 도로(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24조의4제1호)를 신설하는 경우도 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」 제26조4제1항의 "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"에 해당됨(법제처-13-0076)

[이유]

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으려면 "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 공시설을 설치한 경우"라고 하여,"대체"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기능의 대체로 한정하거나 같은 종 류의 공공시설로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,"대체"는 통상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 의 공공시설을 다른 종류의 공공시설로 바꾼다고 하여 "대체"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하수도시설이 도로로 대체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것임.

◎ 대법원2009.6.11.선고2007다36209판결

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의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·구거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,이는 그 사업준공 시점에서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병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바,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유상매수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원인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고 볼 것이다.

◎ 대법원1987.07.07.선고87다카372판결

구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

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절차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하고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,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셈이 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.